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48 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김승수·최수진·우재준

김소희 · 송언석 · 주진우

박충권 · 임이자 · 김상훈

김예지 • 이달희 • 한기호

박성민 • 조승환 • 서지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'도로교통사고의 조사·분석'을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통계에는 '도로'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,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'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·분석'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

조제10호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도로에서의 교통안전"을 "교통안전"으로 한다.

제6조제10호 중 "도로교통사고"를 "교통사고(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도로교 | 제1조(목적) | | |
| 통공단을 설립하여 <u>도로에서의</u> | <u>교통안전</u> | | |
| <u>교통안전</u> 에 관한 교육·홍보·연 | | | |
| 구·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| | | |
|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| | | |
|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 | | | |
| 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| | | |
|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 | | | |
|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| | | |
| 로 한다. | | | |
| 제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| 제6조(사업) | | |
| 사업을 한다. | , | | |
| 1. ~ 9. (생 략)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| | |
| 10. <u>도로교통사고</u> 의 조사・분석 | 10. 교통사고(도로 외의 곳에서 | | |
| 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|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| | |
| 그 지원에 관한 업무 | <u>다)</u> | | |
| | | | |
| | | | |
| 11. ~ 16. (생 략) | 11. ~ 16. (현행과 같음) | | |